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303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303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0646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이춘상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5.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06464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57,164,2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7,164,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1,7300,000원’을 ‘1,730,000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 4면 밑에서 6행의 ‘뿐만 아니라’와 ‘G에’ 사이에 ‘2015. 7. 중순경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를 추가함
- 제1심판결 4면 위에서 9행의 ‘갑 제6호증의 기재’를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로, 5면 밑에서 7행의 ‘14호증’을 ‘15호증’으로 각 고침
- 제1심판결 6면 위에서 4행의 ‘1,229,910,591원’을 ‘1,626,730,000원’으로, 위에서 6행의

‘294,000,000원’을 ‘700,000,000원(이자를 제외한 원금 액수)’으로, 위에서 7행의
‘864,180,591원’을 ‘855,000,000원(이자를 제외한 원금 액수)’으로

각 고침

○ 제1심판결 6면 11행의 ‘구상금채무’를 ‘10억 원 한도의 구상금채무’로, 15행의 ‘9. 1.경 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를 ‘9. 1.경 신용보증기금이 M은행에 대위변제

함으로써 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로 각 고침

○ 제1심판결 6면 밑에서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라) 피고들은, N 등 4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합한 669,523,071원도 D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N(해지환급금 224,255,307원)과 O(해지환급금 232,137,314원)에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는 D이
아니라 배우자 P이고 위 각 해지환급금은 2015. 8. 4. P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합계액인 456,392,621원은 D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일부
해지환급금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본 소극재산 외에 D이 2016. 10.경 개인회생신청시 신고된
채권내역 중 아래 표 순번 1, 3, 4, 8 기재와 같은 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5. 3. 16.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표] D이 개인회생신청시 신고된 채무(일부)

순번	채권자	발생일	채무액	해당 증거
1	근로복지공단	2014. 9. 29.	50,591,662원	갑 제15호증의 1
2	수출입은행	2013. 7. 16. 2014. 7. 31.	872,031,220원	갑 제15호증의 2
3	Q	2013. 11. 13.	7,839,434원	갑 제15호증의 3
4	역삼세무서	2015. 1기	279,443,560원	갑 제15호증의 4
5	M은행	2014. 6. 20.	50,758,004원	갑 제15호증의 5
6		2013. 9. 16.	151,660,848원	
7		2009. 5. 6.	126,832,860원	
8	서초세무서	2015. 양도소득세	137,573,290원	갑 제15호증의 6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

별지